

심 의 의 결 서

○ '23년 제12차 건축소위원회(구조,굴토,철거전문분야) 건축심의 : 2023. 12. 13.(수)

심의내용	굴토심의 : 신당동 160-14 외 2필지		
심의번호	2023 - 소12 - 1	결 과	조건부 의결
<p>< 의결내용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최근 시멘트의 Cr⁶⁺의 오염문제가 대두되었으므로, 비시멘트 계열의 그라우팅 공법으로 적용할 것 2. 버팀보의 설계축력 보다 여유있게 유압잭의 용량을 적용할 것 3. 시공 시 Con'c 축압지지를 위한 버팀대는 토압을 지지하기 어려운 바, Raker 설치하여 지지할 것 4. 현장의 굴착 버팀이 직선 및 경사지보로 계획되어 있으나, 하중으로 인한 변형의 우려가 있으므로 지보재에 브레이싱을 설치하여 안정성을 확보할 것 5. 6번 코너부에 지보재 배치에 따른 벽체 지보의 불안정 상태를 보완하여 안정성을 추가할 것 6. 지반 조사시 지하수위가 굴착면의 중간, 풍화대층에 위치하므로 CIP 천공시 지반교란으로 지반이완 및 침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반보강을 증대 할 수 있는 실리카겔용 그라우팅을 적용하여 벽체의 안정성 확보 계획을 수립할 것 7. 그라우팅 시공이 매립 및 풍화대층(풍화암포함)에 설치되므로 시공전 시험그라우팅을 실시하여 효과적인 시공성을 확인한 후 시방규정을 정하여 정밀 시공토록 그라우팅 시공에 대한 상세규정을 시방에 명기할 것 8. 굴착 공사시 기존 구조물 철거가 완료되었는지 감리자의 확인이 필요하며 철거로 인한 지반 이완으로 CIP 시공시 대형장비의 전도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 시공하도록 시방에 명기할 것 9. 엄지말뚝 및 CIP 철근 길이가 15m 이상되므로 이음부위 및 철근 겹이음을 도면에 명기하여 연결로 인한 구조적인 취약성이 없도록 계획할 것 10. 가시설 단면A의 좌측 CIP 근입깊이와 이중 굴착되는 토류판 구간의 굴착깊이가 같으므로 근입장의 안정성 확보가 어려우므로 벽체의 근입깊이를 보완하여 굴착으로 인한 안정성을 확보할 것 11. 효율적인 계측관리를 위하여 초기치 설정 및 공사 중 계측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추가로 계측 계획평면 및 단면 상세도에 명기하고, 엔지니어링 활동 업체가 계측관리를 수행하여야 하며, 토질 기술사를 보유하여 토질 기술사의 날인과 검토 후 계측관리 보고서 제출로 도면에 명기할 것 12. 굴착 및 해체 순서도 및 구조계산서에는 지보재 해체에 따른 건축벽체가 캔틸레버로 되어 있으므로 건축구조의 확인 또는 RAKER 보강으로 적용할 것 13. 본 현장은 지하안전영향 평가 대상지로 10m 이상 굴착 현장으로 시공 시 토질 전문가에게 월1회 이상 굴착 컨설팅을 받아 시공할 것(설계사 제외) 14. 사보강재 설치구간에는 버팀보 축력의 수평분력에 의해 벽체와 띠장 간 전단력이 크게 작용하므로 버팀보와 띠장을 연결하는 홈메우기 용접부의 전단검토를 실시하고, 홈메우기 상세도를 추가할 것 15. C-010 평면도 남측에 그라우팅이 대지경계를 넘어가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에 대해 검토할 것 <p>→ 뒷면계속</p>			

< 의결내용 >

16. 차수 그라우팅 공법으로 SGR을 적용하였는데, SGR공법은 소요의 차수성능을 발휘하기 어려우므로 그라우트재의 용탈이 적고, 지하수 오염이 없는 친환경 그라우팅으로 변경할 것
 17. 시공 시 필요한 재료량을 명기하고 반입과 반출을 감리자가 확인할 것
 18. 복공 설치시 최상단 버팀보와 복공과의 간섭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복공설치 계획도로를 추가하고, 복공 설치에 따른 버팀보의 위치를 재조정할 것
 19. C-016 CIP 상세도에서 보 걸이를 엄지말뚝에 볼트로 연결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는데, 이는 시공 불가능하므로 용접으로 변경할 것
 20. C-016 CIP 상세도에서 시멘트 몰탈로 홈메우기를 하였는데, 시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 강구할 것
 21. C-023 시공 순서도에서 버팀보 단별 굴착 깊이는 띠장에서 1.0m로 반영하여 구조검토 실시할 것 (KDS 21 30 00 : 2022)
 22. C-023 시공 순서도에서 토류판 설치구간 굴착은 공간이 협소하여 소단 형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소단이 없는 것으로 재검토할 것
 23. C-026 시공순서도에서 신축건물의 이음철근이 띠장과의 간섭으로 시공이 어려우므로 이음철근 길이를 고려하여 버팀보 위치 또는 벽체 타설높이를 조정할 것
 24. 버팀보의 축력측정을 위해 변형률계를 설치하였는데, 변형률계의 정확한 계측을 위해서는 초기치 측정이 매우 중요하므로 각 단별 버팀보 설치 후 선행하중을 가하기 전에 초기치를 측정하도록 도면에 명기할 것
 25. 버팀보 해체시 요하는 신축건물 외벽 및 슬래브의 콘크리트 압축강도를 도면에 명기할 것
 26. 하단 버팀보는 축력이 100ton을 상회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도면상에 버팀보의 축력을 명기하고 축력이 100ton이 넘는 구간에는 100ton 이상의 유압잭을 설치할 것
 27. 160-13번지 건축물에 대한 건물 기울기 측정계 등 계측빈도를 현재 주2회에서 더 증가시킬 것
 28. 인접 건물에 대한 사물인터넷(IoT) 계측 관리를 실시할 것(권장)
 - 계측관리 대상
 - 표준 : 흙막이 벽체에서 1.2H이내 위치한 모든 건축물(※ H:최대굴착깊이)
 - 추가 : 흙막이 벽체에서 2H이내 위치한 주요구조물(1·2종시설물) 및 사용승인 후 30년이상 경과된 노후건축물
 - 계측관리 시행
 - 공사 중 사물인터넷(IoT) 계측관리로 실시간 원격 모니터링 시행 및 사용승인 신청 시 계측보고서 제출
- ※ 기타 안내사항
- 본 심의에서는 관련법규 검토를 제외하였으며, 따라서 건축심의와 인·허가와와는 별개의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심 의 의 결 서

○ '23년 제12차 건축소위원회(구조,굴토,철거전문분야) 건축심의 : 2023. 12. 13.(수)

심의내용	굴토심의 : 신당동 163-17		
심의번호	2023 - 소12 - 2	결 과	조건부 의결
<p>< 의결내용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계획수위 이하에 대한 차수 대책을 보완하고 콘크리트 그라우팅은 차수성능 확보가 어려우므로 차수 성능이 우수(용찰이 적고)하고 지하수 오염이 없는 친환경 그라우팅을 적용할 것 2. 시공 시 필요한 재료량을 명기하고 반입과 반출을 감리자가 확인할 것 3. 되메움 재료를 경량기포 Con'c 또는 골재로 적용할 것 4. 구조계산서상 봉적토층에 점착력을 적용한 근거를 현장 시험치로 적용하여 재구조 검토할 것 5. 전개도 NO 25-29구간에 지보재 설치구간 배면에 토압을 받을수 없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토압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대책 수립하여 도면에 추가할 것 6. PILE NO 14-27구간에 H-PILE 시공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지하 건축구조물 축소하여 흙막이 벽체가 시공될 수 있도록 재검토할 것 7. 흙막이 벽체에서 풍적층은 CIP공법으로 변경 계획할 것 8. 코너 지보재 상부에 앵글 보강 조치할 것 9. 수평 지보재가 싱글로 적용되어 있으나, 안전을 위하여 더블로 보강 조치할 것 10. CIP 천공으로 인한 인접 구조물의 침하가 예상되므로 그라우팅 적용할 것 11. CIP 천공 시 저소음, 저진동 공법으로 시방에 명기할 것 12. 구조계산서상 볼트 수량과 상세도의 수량이 상의하며, 시공이 가능한 코너 지보재 볼트로 적용하여 상세도 수정할 것 13. 지표 침하계 원지반에 설치하는 것으로 상세도 변경 조치할 것 14. 계측계획 단면도를 추가하여 지하 수위계 및 지중 경사계를 흙막이 벽체에서 0.5m 정도 이격하여 설치토록 도면에 명기할 것 15. C-114 시공 순서도에서 버팀보 단별 굴착 깊이는 띠장에서 1.0m 이하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구조검토 실시할 것(KDS 21 30 00 : 2022) 16. C-114 시공 순서도에서 흙막이 벽체와 신축건물 사이에 되메우기를 실시하도록 계획하였는데, 되메우기 재료의 규격을 명기할 것 <p>→ 뒷면계속</p>			

< 의결내용 >

17. 경사계 설치 시 CIP 배면에 설치로 단면도에 표기 및 시방서에 명기할 것
18. C-114 시공 순서도에서 신축건물의 이음 철근이 띠장과의 간섭으로 시공이 어려우므로 이음 철근 길이를 고려하여 버팀보 위치 또는 벽체타설 높이를 조정할 것
19. 탄소성해석시 되메움재료의 물성치 산정근거를 제시하고, 탄소성해석 자료를 추가할 것
20. 지하수위 이하 작업구간에 대한 차수대책이 보완할 것
21. 인접 건물에 대한 사물인터넷(IoT) 계측 관리를 실시할 것(권장)
 - 계측관리 대상
 - 표준 : 흙막이 벽체에서 1.2H이내 위치한 모든 건축물(※ H:최대굴착깊이)
 - 추가 : 흙막이 벽체에서 2H이내 위치한 주요구조물(1·2종시설물) 및 사용승인 후 30년이상 경과된 노후건축물
 - 계측관리 시행
 - 공사 중 사물인터넷(IoT) 계측관리로 실시간 원격 모니터링 시행 및 사용승인 신청 시 계측보고서 제출

※ 기타 안내사항

- 본 심의에서는 관련법규 검토를 제외하였으며, 따라서 건축심의와 인·허가와는 별개의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심 의 의 결 서

○ '23년 제12차 건축소위원회(구조,굴토,철거전문분야) 건축심의 : 2023. 12. 13.(수)

심의내용	굴토심의 : 총정로1가 57		
심의번호	2023 - 소12 - 3	결 과	조건부 의결
<p>< 의결내용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토목 상주감리 배치(토목설계자를 감리자로 배치)하고 굴착 시와 건축물 1층 슬라브 타설 시까지 상주할 것 2. 석축 구간 근입장 3.0m는 최소화를 재검토할 것 3. 석축은 취성 구조물로 지반 변형 시 급격한 붕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계측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므로 실시간 계측을 실시토록 도면에 명기하고, 석축의 노후도 등을 조사하여 이를 감안한 계측을 실시할 것 4. C-005 단면도의 우측 상단에 석축이 존재하는데, 굴착 단계별 석축의 안정성을 검토할 것 5. 흙막이 천공 시 인접 구조물의 침하가 예상되므로 그라우팅 적용할 것 6. CIP 천공 시 저소음, 저진동 공법으로 시방에 명기할 것 7. 석축 상단에 담장이 존재하는데 담장의 기초형식을 명확히 명기할 것 8. 구조계산서상 풍화토층에 점착력을 적용한 근거를 현장 시험치로 적용하여 구조 재검토할 것 9. 현장의 레벨 차가 있어 흙막이 벽체를 CIP 공법으로 적용할 것 10. 흙막이 강재를 150으로 적용 시 편도압 발생 변위량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강재 규격을 300X200X9X14 이상으로 적용할 것 11. 평면도에 강재 표기를 정확히 명기할 것 12. 구조계산서상 볼트 수량과 상세도의 수량이 상의하며, 시공이 가능한 코너 지보재 볼트로 적용하여 상세도 수정할 것 13. 지표 침하계 원지반에 설치하는 것으로 상세도 변경 조치할 것 14. 경사계 설치 시 CIP 배면에 설치로 단면도에 표기 및 시방서에 명기할 것 15. 해체 시에서 건축물 벽체 1차 타설 후 RAKER 보강으로 적용 및 재검토할 것 16. 본 현장은 고저차로 인하여 내부 가시설의 회전 우려가 크므로 버팀보와 락을 연결하는 흠 메우기 용접부의 전단 검토를 실시하고, 흠메우기 상세도를 추가할 것 17. 코너스트럿 구간의 흠 메우기 용접에 대한 현장 품질관리를 철저히하고, 이를 위해 설계도면상에 용접길이, 목두께 등을 명확히 기재할 것 18. 설계자가 현황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으므로 설계자가 현장감리를 실시하도록 할 것 <p>→ 뒷면계속</p>			

< 의결내용 >

19. 평면도 상에서 버팀보의 축력이 집중되는 구간은 반대편 구간의 고저차와 석축이 존재하므로 집중되는 축력이 클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축력집중구간의 변위 검토를 추가하고, 배면 지반의 보강 여부를 검토할 것
20. 지보재를 싱글에서 더블로 적용하고 탄소성 해석 데이터를 추가할 것
21. C-005 단면도의 상단 버팀보에서 띠장과 스크류 잭의 연결부 상세도 및 띠장과 버팀보 연결부 상세도를 추가할 것
22. C-014 시공순서도에서 버팀보 단별 굴착깊이는 띠장에서 1.0m 이하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구조검토 실시할 것(KDS 21 30 00 : 2022)
23. 본 현장은 공간이 협소하여 소단형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탄소성 해석시 소단이 없는 것으로 재검토할 것
24. C-015 시공순서도에서 신축건물의 이음철근이 띠장과 의 간섭으로 시공이 어려우므로 이음철근 길이를 고려하여 버팀보위치 또는 벽체타설높이를 조정할 것
25. 흙막이 설계 보고서 P181에서 경사버팀보 구간의 굴착면의 경사를 15°로 계획하였는데, 반대편 버팀보 위치의 굴착면과 같은 위치로 수평하게 수정할 것
26. 작업 간 배수 계획을 보완할 것
27. 변위 억제를 위해 유압잭을 적용할 것
28. 58-4 부지 인접 구간의 토사 붕괴 방지대책을 보완한 후 시공할 것
29. 인접 건물에 대한 사물인터넷(IoT) 계측 관리를 실시할 것
 - 계측관리 대상
 - 표준 : 흙막이 벽체에서 1.2H이내 위치한 모든 건축물(※ H:최대굴착깊이)
 - 추가 : 흙막이 벽체에서 2H이내 위치한 주요구조물(1·2층시설물) 및 사용승인 후 30년이상 경과된 노후건축물
 - 계측관리 시행
 - 공사 중 사물인터넷(IoT) 계측관리로 실시간 원격 모니터링 시행 및 사용승인 신청 시 계측보고서 제출

※ 기타 안내사항

- 본 심의에서는 관련법규 검토를 제외하였으며, 따라서 건축심의와 인·허가와 는 별개의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심 의 의 결 서

○ '23년 제12차 건축소위원회(구조,굴토,철거전문분야) 건축심의 : 2023. 12. 13.(수)

심의내용	해체안전심의 : 장충동2가 191 외 3필지		
심의번호	2023 - 소12 - 4	결 과	조건부의결
<p>< 의결내용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철거 부지마다 부지 종, 횡 단면도를 작성하여 대지경계선과 본부지의 이격거리, 인접 구조물과 이격거리 도면에 표기 후 비계 설치 여부를 확인하여 제출할 것 2. 도로면에 위치한 구조물 철거시 낙하물 방지시설 추가 설치할 것 3. 철거전에 지하, 지상에 배수가 될 수 있도록 배수 계획을 수립하여 도면에 명기할 것 4. 소음 진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 (측정위치, 측정시기, 횡수 등) 5. 살수 계획 재 수립하여 도면에 이동식과 고정식을 표기할 것 6. 이동식 크레인 50TON에서 안전을 위하여 7TON으로 장비 인향 계획 수립하시길 바라며, 레거 위치에 지장물 및 지하층 철거시 원 지반에 대한 검토 추가할 것 7. 철거 계획을 각 지번마다 수립하여 제출할 것 8. 지하층 있는 철거 계획 수립하여 제출 바라며, 만약 지하층 철거시 흙막이 도면과 구조계산서를 토질 기술사의 날인을 받아 제출할 것 9. 도면에 잔재물 투하구의 크기를 정확히 명기하고 투하구에 작업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10. 대지의 레벨 표기와 1.1공사개요 해체범위에서의 GL 레벨차가 다르므로 일치시킬 것(공사개요의 배치도 레벨4700과 7700은 레벨차 3000이나 단면상 레벨차는 3700) 11. B-B단면 절단선에 의한 단면도 제출할 것 12. 각 단면에 배치도에 있는 레벨을 표기하여 비교가 가능하도록 표기할 것 13. 해체장비 진입시 해체잔재물로 경사로를 형성하여 진입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는데, 장비의 전도 방지 및 미끄럼 방지 대책에 대하여 명기할 것 14. 193-44번지 대지경계 침범되지 않도록 철거작업 통제할 것 15. 191번지 철골구조물 철거 시 양중 반경이 대지 경계선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관리할 것 <p>→ 뒷면계속</p>			

< 의결내용 >

16. 193-41번지의 2개동으로 보여지며 각 동의 면적 및 층수가 별도 표기되어야 하며, 193-41번지의 해체 범위 단면 A동은 있으나 나머지 동의 단면이 작성이 안되어있으므로 단면도 제출할 것
17. P164 단위구역별 해체순서 X9열부분의 순서도 작성할 것(작성된 순서도는 X8열의 부분 도달시의 순서도)
18. P168 ⑤,P169 ⑥,P170 ⑦장비위치의 해체순서를 현장에 맞도록 수정할 것
19. 석축 안전성 검토보고서를 해체 허가 신청 시 제출할 것
20. P141 가시설물 설치계획에서 외부비계의 강성확보를 위해 코너부에 사보강재를 설치하여 보강할 것
21. P160 해체작업 순서에서 지하외벽 해체 계획서 추가할 것
22. P173에서 단계별 해체평면도만 있는데, 단계별 해체 단면도를 추가하고, 특히 1층 해체 순서도를 별도로 추가할 것
23. P173에서 1층 우측 외벽 전면에 해체 잔재물 쌓기를 하였는데, 해체 잔재물 쌓기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지상2층 바닥슬래브를 제거하여야 함. 따라서 2층 슬래브 제거시 벽체가 캔틸레버 상태가 되는데, 이에 대한 안정성 검토할 것
24. P173에서 1층 바닥 철거후 1층 우측 외벽의 외적안정(전도, 활동 등)에 대한 안정성 검토 추가할 것
25. P204에서 CCTV설치는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추가로 배치하고,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까지 관찰할 수 있도록 배치할 것
26. 비계 설치시 감리자 입회하에 설치할 것(권장)
27. 해체공사시 주변 주민 민원이 없도록 물뿌리기를 철저히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할 것
28. 해체작업시 소음이 큰 작업은 시작 시간을 조절하여 주변 주민피해가 없도록 관리할 것
29. 191번지 강구조 건축물은 해체시 별도의 해체방법 검토할 것
30. 191번지 철거물 양중 과정에서 193-44번지 등 인접건물 대지경계선으로 침범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할 것
31. 193-41 철거 시 193-44번지 대지경계선으로 해체물이 낙하, 비산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

※ 기타 안내사항

- 본 심의에서는 관련법규 검토를 제외하였으며, 따라서 건축심의와 인·허가와와는 별개의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심 의 의 결 서

○ '23년 제12차 건축소위원회(구조,굴토,철거전문분야) 건축심의 : 2023. 12. 13.(수)

심의내용	해체안전심의 : 을지로2가 199-59		
심의번호	2023 - 소12 - 5	결 과	조건부 의결
<p>< 의결내용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철거 부지마다 부지 종, 횡 단면도를 작성하여 대지경계선과 본부지의 이격거리, 인접구조물과 이격거리 도면에 표기 후 비계 설치 여부를 확인하여 제출할 것 2. 도로면에 위치한 구조물 철거시 낙하물 방지시설 추가 설치할 것 3. 인접 구조물과 인접거리가 이격거리가 좁아 계획계획 수립할 것 4. 철거전에 지하, 지상에 배수가 될 수 있도록 배수 계획을 수립하여 도면에 명기할 것 5. 이동식 크레인 30TON에서 안전을 위하여 50TON 장비 인향 계획 수립하시길 바라며, 레거 위치에 지장물 위치 설치를 금하도록 시방에 명기할 것 6. 소음 진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측정위치, 측정시기, 횡수 등) 7. 본 철거시 인접과 매우 이격거리가 좁아 살수 계획 재 수립하여 도면에 이동식과 고정식을 표기할 것 8. 지하층 있는 철거 계획 수립하여 제출 바라며, 만약 지하층 철거시 흙막이 도면과 구조계산서를 토질 기술사의 날인을 받아 제출바라며, 본 형장은 금회 미철거로 시방서에 굴토심의시 지하층 철거에 대한 사항을 명기할 것 9. 도면에 잔재물 투하구의 크기를 정확히 명기하고 투하구에 작업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10. 잔재물 투하방법과 처리 및 반출방법을 도면에 명기할 것 11. 지하층 미철거로 인한 지하층 잔재물 처리 방법을 제시할 것 12. P98에서 폐기물 투하구에 작업자의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대책 명기할 것 13. 폐기물 투하구에 폐기물반출슈트를 설치하여 폐기물 투하시 발생하는 분진 및 폐기물의 이탈을 억제 하도록 계획할 것 14. 하부층으로 폐기물 투하시 하부층 소음 및 진동 저감을 위해 페매트리스 등을 설치하도록 조치할 것 <p>→ 뒷면계속</p>			

< 의결내용 >

15. 잭서포트 재사용시 강도저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장반입시 자재검수를 철저히 하여 힘이 발생되지 않은 자재가 반입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16. P109에서 지하층을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는데, 철거 완료 후 건물 신축을 위해서는 기존건물의 철거계획이 명확하여야 하므로 철거대상 건물 지하층의 외벽라인과 신축건물의 흠막이 라인 및 대지경계선을 표시하여 지하층 철거 가능성 및 난이도를 파악하여 본 철거보고서에 명기할 것
17. 외부 비계가 1면만 설치해야 하는 관계로 비계 상부 부분의 전도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18. 상부층의 잔재물 투하로 인한 처리계획 수립필요(투하된 잔재물을 1층 및 상부층 연속으로 잭 써포트가 설치되어있어 투하구 자체가 계속적으로 누적될 것으로 예상됨)
19. 비계 설치시 감리자 입회하에 설치할 것(권장)
20. 해체대상건물이 인접건물과 붙어있어 인접건물에 피해를 수 있는바, 착공전 주변건물 현황조사 실시할 것
21. 가설비계 구조계산시 작업시하중과 태풍시하중을 고려하여 큰하중을 적용하였다고 적고 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는바, 재검토할 것
22. 내부에 JACK SUPPORT 설치후, 건축구조기술사의 확인을 받고 해체공사 착수하시기 검토할 것
23. 인력작업 시 2인1조 편성하도록 하고 해체계획서에 명기할 것
24. 인접건물 방향 외벽의 외부전도 방지대책을 준비하여 시공할 것
25. 폐기물 투하구 하부의 낙하물 충격방지, 비산방지 대책을 보완하여 제시할 것
26. 지상 4층 이하 인접건축물과 밀접된 외벽의 해체 시공 방법을 상세히 기재하여 보완할 것
27. 인접 건축물과 붙어 있는 바, 내부로 당겨서 충격과 진동으로 인접건물에 피해가 없도록 검토할 것
28. 풍하중 산정 시 가설재 설계기준에 맞는 기본풍속을 확인하여 계획할 것
29. 지상1층 폐기물 잔재물 반출시 투하구 앞 부분의 잭서포트 간섭을 최소화할 것

※ 기타 안내사항

- 본 심의에서는 관련법규 검토를 제외하였으며, 따라서 건축심의와 인·허가와와는 별개의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심 의 의 결 서

○ '23년 제12차 건축소위원회(구조,굴토,철거전문분야) 건축심의 : 2023. 12. 13.(수)

심의내용	해체안전심의 : 증림동 128-109 외 5필지		
심의번호	2023 - 소12 - 6	결 과	조건부 의결
<p>< 의결내용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철거로 인해 인접 건물 균열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방안 강구하여 제출할 것 2. 철거 부지마다 부지 종, 횡 단면도를 작성하여 대지경계선과 본부지의 이격거리, 인접 구조물과 이격거리 도면에 표기 후 비계 설치 여부를 확인하여 제출할 것 3. 옹벽 미철거시 옹벽에 대한 안정 점검 및 계측기 설치 계획 수립할 것 4. 철거 전에 지하, 지상에 배수가 될 수 있도록 배수 계획을 수립하여 도면에 명기할 것 5. 소음 진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측정위치, 측정시기, 횡수 등) 6. 살수 계획 재 수립하여 도면에 이동식과 고정식을 표기할 것 7. 레벨차 구간에 건축벽체 철거로 철거 계획시 신축 구조물 설계시 지하층 철거 계획 수립하여 굴토심의를 진행할수 있도록 해체 계획서에 명기할 것 8. 기존 건물의 기초 MAT의 철거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것 9. 비탈면 쌓기의 안정성을 토질 기술사의 확인을 받아 제출할 것 10. 잔재물 투하방법과 처리 및 반출방법을 도면에 명기할 것 11. P3-4에서 해체장비의 최대작업높이가 대상건축물의 최대높이 보다 3m 이상 작업여유가 있어서 구조체의 외부전도 및 낙하물 발생의 위험을 최소화 해야하하나 굴착여유 높이가 2.579m이므로 3m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해체장비 제원을 상향조정할 것(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매뉴얼 및 표준서식(국토안전관리원)) 12. P4-9, 10에서 슬래브 해체 후 폐기물 되메우기 시 까지 지하외벽이 캔틸레버 상태가 되므로 지하외벽의 구조검토 실시할 것 13. P4-10에서 지하층을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는데, 철거 완료 후 건물 신축을 위해서는 기존건물의 철거 계획이 명확하여야 하므로 철거 대상 건물 지하층의 외벽 라인과 신축건물의 흠막이 라인 및 대지 경계선을 표시하여 지하층 철거 가능성 및 난이도를 파악하여 본 철거보고서에 명기할 것 14. X1열 및 X11열 외벽의 작업 간 외벽전도 방지대책을 마련한 후 작업할 것 15. 해체대상건물이 인접건물과 붙어있고, 지붕 철골트러스 해체시 압쇄공법이 적절한지 검토할 것 <p>※ 기타 안내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심의에서는 관련법규 검토를 제외하였으며, 따라서 건축심의와 인·허가와는 별개의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심 의 의 결 서

○ '23년 제12차 건축소위원회(구조, 굴토, 철거전문분야) 건축심의 : 2023. 12. 13.(수)

심의내용	해체안전심의 : 남대문로2가 111-1		
심의번호	2023 - 소12 - 7	결 과	원안의결
<p>< 의결내용 ></p> <p><input type="checkbox"/> 제출된 안으로 원안의결되었으며, 아래 사항에 대하여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기 바랍니다.</p> <p>1. 작업자 추락 및 폐기물 낙하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p> <p>※ 기타 안내사항</p> <p>- 본 심의에서는 관련법규 검토를 제외하였으며, 따라서 건축심의와 인·허가와 는 별개의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p>			

심 의 의 결 서

○ '23년 제12차 건축소위원회(구조,굴토,철거전문분야) 건축심의 : 2023. 12. 13.(수)

심의내용	해체안전심의 : 신당동 432-640		
심의번호	2023 - 소12 - 8	결 과	재심 의결
<p>< 의결내용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본 건물은 연와조 내부 벽체 철거 시 안전이 매우 위험할 수 있으므로, 대수선이 아닌 완전 해체 후 신축하는 것으로 재검토할 것 2. 내력벽 철거 후 건물의 안전성검토 여부 검토하여 계획할 것(내력벽 철거 전후에 대한 검토결과 제시 미흡) 3. 대수선 시 설치되는 철골 기둥과 철골보 설치가 해체공정과 연계한 자세한 공정 계획서를 제출할 것 4. 철거 부지마다 부지 종, 횡 단면도를 작성하여 대지경계선과 본부지의 이격거리, 인접 구조물과 이격거리 도면에 표기 후 비계 설치 여부를 확인하여 제출할 것 5. 철거 전에 지하, 지상에 배수가 될 수 있도록 배수 계획을 수립하여 도면에 명기할 것 6. 소음 진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측정위치, 측정시기, 횡수 등) 7. 인접 구조물 옹벽에 대한 안정성 검토 제출할 것 8. 살수 계획 재 수립하여 도면에 이동식과 고정식을 표기할 것 9. 본 현장에 이동식 설치 위치가 매우 레벨차가 있는 구간으로 현재 적용한 크레인 규격보다 2배 이상인 장비규격으로 적용하길 바라며, 크레인 레거 위치에 지장물 위치 설치를 금하도록 시방에 명기할 것 10. 도면에 잔재물 투하구의 크기를 정확히 명기하고 투하구에 작업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11. 철거 시 인접 구조물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12. 해체장비가 계단을 통하여 층간 이동을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는데, 해체장비의 미끄럼 방지대책 명기할 것 13. 비계 수직재를 바닥에 고정하는 방식을 보완할 것 14. 옥탑층 파라펫 해체 시 외부로 폐기물이 낙하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 15. 장비이동 통로인 계단부에 잭서포트 배치 여부 검토할 것 16. 비계 설치시 감리자 입회하에 설치할 것(권장) <p>→ 뒷면계속</p>			

< 의결내용 >

17. 잭서포트 재사용시 강도 저하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현장 반입시 자재검수를 철저히 하여 힘이 발생되지 않은 자재가 반입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18. 도면의 해상도가 낮아 해체 부분의 파악이 어려운바, 해상도 높은 자료를 제출할 것
19. 외부비계 설치 시 바닥에 고정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계획하시고 계획대로 시공할 것
20. 옥탑층 및 옥상층 벽체 철거 시 외벽의 외부 전도 방지대책 마련 혹은 외벽 해체물의 외부 전도 시 해체물의 외부 낙하, 비산방지대책을 보완할 것
21. 인력 작업 시 2인 1조 편성하여 작업할 것
22. 지상 1층 폐기물투하구 하부에 폐기물 투하로 인한 충격 및 비산방지 시설을 설치한 후 작업할 것

※ 기타 안내사항

- 본 심의에서는 관련법규 검토를 제외하였으며, 따라서 건축심의와 인·허가와와는 별개의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심 의 의 결 서

○ '23년 제12차 건축소위원회(구조,골토,철거전문분야) 건축심의 : 2023. 12. 13.(수)

심의내용	해체안전심의 : 신당동 290-27		
심의번호	2023 - 소12 - 10	결 과	조건부의결
<p>< 의결내용 ></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도로면에 위치한 구조물 철거시 낙하물 방지시설 추가 설치할 것2. 철거 전에 지상에 배수가 될 수 있도록 배수 계획을 수립하여 도면에 명기할 것3. 소음 진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측정위치, 측정시기, 횟수 등)4. 도면에 잔재물 투하구의 크기를 정확히 명기하고 투하구에 작업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5. 잭서포트 재사용시 강도저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장반입시 자재검수를 철저히 하여 힘이 발생되지 않은 자재가 반입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6. 인력 작업 시 2인 1조 투입할 것7. 작업인력은 반드시 보안경 착용 후 작업 진행할 것8. 파라펫 해체 등 옥상 작업 후 해체물의 낙하를 방지하거나 낙하물의 충격 및 비산을 방지하는 시설을 구체적으로 보완 후 시공할 것 <p>※ 기타 안내사항</p> <p>- 본 심의에서는 관련법규 검토를 제외하였으며, 따라서 건축심의와 인·허가와는 별개의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p>			